

2.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부록) 주요개정사항

* 쪽_2022 보육사업안내(하반기 개정) 해당 쪽수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33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제2항 위임장 별도 서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colspan="4">위 임 장</td> </tr> <tr>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r> <tr>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r> </table>	위 임 장												[별지]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제2항 위임장 별도 서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colspan="4">위 임 장</td> </tr>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성명</td> <td style="width: 30%;">(인)</td> <td style="width: 50%;">주민등록번호</td> </tr> <tr> <td style="width: 10%;">대리인</td> <td style="width: 10%;">주소</td>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50%;"></td> </tr> </table>	위 임 장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임장 서식 구체적으로 수정 	
위 임 장																													
위 임 장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소																												
46	2 2022년도 재무·회계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세입항목> 1 보육료(01관)	가. 적용범위 ○ 정부지원 보육료(111목) - 만0~5세아, 장애아, 다문화 가족 자녀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	가. 적용범위 ○ 정부지원 보육료(111목) - 만0~5세아, 장애아, 다문화 가족 자녀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간식비 대상 지자체 자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보육료(111목)에서 보육료에 포함된 급식비, 간식비 횟수를 삭제 																									
47	2 2022년도 재무·회계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세입항목> 2 수익자부담 수입(2관)	나. 기타 필요경비(221목) ○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 전자출결 태그 비용 * 신입원아의 입학준비금은 당해연도에 수납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당해 회계연도 개시(3월) 전에 선 수납하였을 경우 “기타필요경비” 항목으로 세입 후 ‘22년 회계연도로 이월하도록 함 * 예시) ‘22년 2월에 입학준비금을 선 수납한 경우 ‘21년 “기타필요경비” 항목으로 세입 후, ‘22년 회계로 이월. 이월 시 “전년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계상(단 “선수납 이월”을 표기하여 관리)	나. 기타 필요경비(221목) ○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 전자출결 태그 비용 * 신입원아의 입학준비금은 당해연도에 수납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당해 회계연도 개시(3월) 전에 선 수납하였을 경우 “기타필요경비” 항목으로 세입 후 ‘23년 회계연도로 이월하도록 함 * 예시) ‘23년 2월에 입학준비금을 선 수납한 경우 ‘22년 “기타필요경비” 항목으로 세입 후, ‘23년 회계로 이월. 이월 시 “전년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계상(단 “선수납 이월”을 표기하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전환 반영 																									
49	2 2022년도 재무·회계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다. 공공형운영비(323목) 2) 일반사항 (예시) 공공형 활성화비→기타지원금(324목), 조리사	다. 공공형운영비(323목) 2) 일반사항 (예시) 공공형 활성화비→ 그 밖의 지원금 (324목),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정과목 오기재 수정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세입항목>	지원금→인건비보조금(311목) 등	리사 지원금→인건비보조금(311목) 등		
51	2. 2022년도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세입항목>	다. 장기차입금(422목) *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보 육료(112목)+기본 보육료(321목) +연장보육료(322목)	다. 장기차입금(422목) *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보 육료(112목)+ 기관 보육료(321목) +연장보육료(322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정과목 오기재 수정 	
52	2. 2022년도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세입항목> 6. 적립금(06관)	가. 적립금 처분 수입(611목) 1) 적용범위 ○ 세출 예산 적립금(511목)의 사용을 위해 실제 운 영비 통장으로 입금된 적립액 및 적립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환급금 ○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인출금 등 ○ (신설)	가. 적립금 처분 수입(611목) 1) 적용범위 ○ 세출 예산 적립금(511목)의 사용을 위해 실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된 적립액 및 적립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환급금 ○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인출금 등 ○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 반환 등을 위한 환급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문 개정사항 반영 	
53	2. 2022년도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세출항목> 1. 인건비(100관)	가. 적용범위 (생략)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2022년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함	가. 적용범위 (생략)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2023년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전환 반영 	
53	2. 2022년도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세출항목> 1. 인건비(100관)	나. 일반사항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2022년도 어린이집 보 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함 (생략) ○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신설)	나. 일반사항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2023년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함 (생략) ○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2023년 기준 월 2,010,580원(* 2022년 월 1,914,44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전환 반영 당해 최저임금 지급액 안내 	
57	2. 2022년도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세출항목>	마. 업무추진비(220항) 2) 일반사항 (생략) ○ 사군구는 어린이집의 직책급이 과도하게 자출되지 않도록 지도	마. 업무추진비(220항) 2) 일반사항 (생략) ○ 사군구는 어린이집의 직책급이 과도하게 자출되지 않도록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수당의 구체적 의미 추가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2 운영비(200관)	- 직책급은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계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 직책급은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위, 경력, 자격급수 등의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계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56	2. 2022년도 재무 회계 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세출항목> 2 운영비(200관)	라. 기타 운영비(217목) 2) 일반사항 (생략)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건물 용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 수 있음	라. 기타 운영비(217목) 2) 일반사항 (생략)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또는 건물 용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 수 있음	▪ 기타운영비 지출 기준 명확화	
58	2. 2022년도 재무 회계 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세출항목> 3 보육활동비(300관)	나. 행사비(313목) (생략) 2) 일반사항 ○ 입학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일체의 경비 - (신설)	나. 행사비(313목) (생략) 2) 일반사항 ○ 입학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일체의 경비 - 기타 필요경비(221목) 부모부담행사비와는 별개로 보육료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부담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필요경비(221목)의 부모부담행사비와 구분하여 행사비(313목) 지출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64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요약 1 총칙	가. 회계연도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회계연도 (2022.3.1.~2023.2.28.)에 의함	가. 회계연도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회계연도 (2023.3.1.~2024.2.28.)에 의함	▪ 연도전환 반영	
67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요약 4. 회계	다. 지출 ○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다. 지출 ○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 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원장이므로, 동일하게 반영하여 삭제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71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1. 제도개요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가. 주요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대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td> </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대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td> </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급여 제도 내용 반영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71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p>1. 제도개요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가. 주요 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대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 (생략) ※ (생략)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td> </tr> <tr> <td>신청</td> <td>(생략)</td> </tr> <tr> <td>급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가정양육수당 (24~85개월): 100~200천원 수령 </td> </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 (생략) ※ (생략)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생략)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가정양육수당 (24~85개월): 100~200천원 수령 	<p>1. 제도개요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가. 주요 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대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 (생략) ※ (생략)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td> </tr> <tr> <td>신청</td> <td>(생략)</td> </tr> <tr> <td>급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22년 이후 출생하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td> </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 (생략) ※ (생략)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생략)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22년 이후 출생하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 반영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 (생략) ※ (생략)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생략)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가정양육수당 (24~85개월): 100~200천원 수령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 (생략) ※ (생략)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생략)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22년 이후 출생하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72	XII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p>종류 및 지원 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이는 양육수당 수령 : 100~200천원 수령 • 영유아(만0~2세)보육료: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532천원 • 장애아보육료: 정부지원시설 월 532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66천원 •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p>종류 및 지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22년 이후 출생이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만0~2세)보육료: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548천원 • 장애아보육료: 정부지원시설 월 548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79천원 •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 인상 ▪ 부모급여 제도 내용 반영 	
76	XII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2 지원신청	<p>가. 신청</p> <p>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p> <p>○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p> <p>※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p> <p>※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p> <p>※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이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p>	<p>가. 신청</p> <p>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p> <p>○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p> <p>※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p> <p>※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p> <p>※ '22년 이후 출생이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급여 제도 내용 반영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76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u>보호자가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등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 가능</u>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한 경우, 실제 양육 및 출생신고 여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중복수급 여부, 타 지자체 진출 여부 등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육서비스가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u>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 가능</u>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한 경우, <u>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 및 법원 신청 결과는 추후 제출하되, 실제 양육 및 출생신고 여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중복수급 여부, 타 지자체 진출 여부 등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육서비스가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조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부 자녀에 대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절차 개선 - 유전자검사 결과 제외 및 관련 서류 명확화 	
77	XIII.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p>☐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p> <p>(보육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에 재원중인 아동 중 '20. 1. 1. 이후 출생 아동 및 방과후 아동 ※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20. 1. 1. 이후 출생 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p>☐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p> <p>(보육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에 재원중인 아동 중 '21. 1. 1. 이후 출생 아동 및 방과후 아동 ※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 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21. 1. 1. 이후 출생 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 전환 ▪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문구 수정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p>지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영아수당(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p>※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77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p><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 (양육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생략) <p>※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① 어린이집·유치원 졸업, ② 수료 후 퇴원, ③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됨(①~③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 아님)</p>	<p><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 (양육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생략) <p>※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학적 처리 현황 반영(교육부 변경 요청) 	
78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p>2)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나) 양육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현재 <u>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최대 85개월)</u>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p>2)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나) 양육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현재 <u>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최대 86개월 미만)</u>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p>※ 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기간 명확화(취학 유예 아동에 대한 지원 기간 불명확으로 민원 및 문의 다수) 	
81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p>참고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지원방법 	<p>참고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혼부 자녀에 대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절차 개선 유전자검사 결과 제외 및 관련 서류 명확화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u>보호자가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등)</u>를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시 제출 - (중간 생략) · 사후관리 - (신설) - (이하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u>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사본 등)</u>를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시 제출 - (현행과 동일) · 사후관리 - <u>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 및 법원 신청 결과 추후 제출</u> - (현행과 같음) 		
83	XII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 4) 신청 구비서류	4) 신청 구비서류 가)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u>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서식 6호]</u> 	4) 신청 구비서류 가)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u>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서식 6호]</u> 	·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85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4) 신청 구비서류 나)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 생략)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u>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등)</u> ※ 신설	4) 신청 구비서류 나)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 생략)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u>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사본 등)</u> ※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 및 법원 신청 결과는 추후 제출하되, 실제 양육 및 출생신고 여부 등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부 자녀에 대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절차 개선 - 유전자검사 결과 제외 및 관련 서류 명확화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89	XII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다. 선정 기준 및 급 여내용 1)나) 3~5세반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취학유예: 만6세아('15. 1. 1.~'15. 12. 31. 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조기입학: '22. 1. 2.~3. 1. 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19. 1. 2.~3. 1. 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19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취학유예: 만6세아('16. 1. 1.~'16. 12. 31. 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조기입학: '23. 1. 2.~3. 1. 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20. 1. 2.~3. 1. 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20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연도 전환에 따른 수정																																	
90	XII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p style="text-align: center;">■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기 준 일 자</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td> <td>'21. 01. 01. 이후 출생</td> </tr> <tr> <td>1세반</td> <td>'20. 01. 01. ~ '20. 12. 31.</td> </tr> <tr> <td>2세반</td> <td>'19. 01. 01. ~ '19. 12. 31.</td> </tr> <tr> <td>3세반</td> <td>'18. 01. 01. ~ '18. 12. 31.</td> </tr> <tr> <td>4세반</td> <td>'17. 01. 01. ~ '17. 12. 31.</td> </tr> <tr> <td>5세반</td> <td>'16. 01. 01. ~ '16.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 1. 1.~'15. 12. 31.)</td> </tr> <tr> <td>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td> <td>'15. 01. 01. ~ '09. 12. 31.</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1.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0. 01. 01. ~ '20. 12. 31.	2세반	'19. 01. 01. ~ '19. 12. 31.	3세반	'18. 01. 01. ~ '18. 12. 31.	4세반	'17. 01. 01. ~ '17. 12. 31.	5세반	'16. 01. 01. ~ '16.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 1. 1.~'15.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5. 01. 01. ~ '09. 12. 31.	<p style="text-align: center;">■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기 준 일 자</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td> <td>'22. 01. 01. 이후 출생</td> </tr> <tr> <td>1세반</td> <td>'21. 01. 01. ~ '21. 12. 31.</td> </tr> <tr> <td>2세반</td> <td>'20. 01. 01. ~ '20. 12. 31.</td> </tr> <tr> <td>3세반</td> <td>'19. 01. 01. ~ '19. 12. 31.</td> </tr> <tr> <td>4세반</td> <td>'18. 01. 01. ~ '18. 12. 31.</td> </tr> <tr> <td>5세반</td> <td>'17. 01. 01. ~ '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16. 12. 31.)</td> </tr> <tr> <td>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td> <td>'16. 01. 01. ~ '10. 12. 31.</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2.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1. 01. 01. ~ '21. 12. 31.	2세반	'20. 01. 01. ~ '20. 12. 31.	3세반	'19. 01. 01. ~ '19. 12. 31.	4세반	'18. 01. 01. ~ '18. 12. 31.	5세반	'17. 01. 01. ~ '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16.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6. 01. 01. ~ '10. 12. 31.	연도 전환에 따른 수정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1.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0. 01. 01. ~ '20. 12. 31.																																				
2세반	'19. 01. 01. ~ '19. 12. 31.																																				
3세반	'18. 01. 01. ~ '18. 12. 31.																																				
4세반	'17. 01. 01. ~ '17. 12. 31.																																				
5세반	'16. 01. 01. ~ '16.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 1. 1.~'15.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5. 01. 01. ~ '09. 12. 31.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2.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1. 01. 01. ~ '21. 12. 31.																																				
2세반	'20. 01. 01. ~ '20. 12. 31.																																				
3세반	'19. 01. 01. ~ '19. 12. 31.																																				
4세반	'18. 01. 01. ~ '18. 12. 31.																																				
5세반	'17. 01. 01. ~ '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16.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6. 01. 01. ~ '10. 12. 31.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90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p style="text-align: center;">■ 보육료 지원금액 ■</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격 구분</th> <th>지원대상</th> <th>지원비율</th> <th>연령</th> <th>정부지원 단가(월)</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영유아</td> <td rowspan="6">영유아가 구 전(全)계 층</td> <td rowspan="6">정부지원 단가 100%</td> <td>0세반 ('22.1.1~)</td> <td>499,000</td> </tr> <tr> <td>1세반 ('22.1.1~)</td> <td>439,000</td> </tr> <tr> <td>2세반 ('22.1.1~)</td> <td>364,000</td> </tr> <tr> <td>3-5세반 누리공동과정 ('22.1.1~2.28.)</td> <td>260,000</td> </tr> <tr> <td>3-5세반 누리공동과정 ('22.3.1~)</td> <td>280,000</td> </tr> <tr> <td></td> <td></td> </tr> </tbody> </table>	자격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 단가(월)	영유아	영유아가 구 전(全)계 층	정부지원 단가 100%	0세반 ('22.1.1~)	499,000	1세반 ('22.1.1~)	439,000	2세반 ('22.1.1~)	364,000	3-5세반 누리공동과정 ('22.1.1~2.28.)	260,000	3-5세반 누리공동과정 ('22.3.1~)	280,000			<p style="text-align: center;">■ 보육료 지원금액 ■</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격 구분</th> <th>지원대상</th> <th>지원비율</th> <th>연령</th> <th>정부지원 단가(월)</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영유아</td> <td rowspan="6">영유아가 구 전(全)계 층</td> <td rowspan="6">정부지원 단가 100%</td> <td>0세반 ('23.1.1~)</td> <td>514,000</td> </tr> <tr> <td>1세반 ('23.1.1~)</td> <td>452,000</td> </tr> <tr> <td>2세반 ('23.1.1~)</td> <td>375,000</td> </tr> <tr> <td>3-5세반 누리공동과정 ('23.1.1~2.28.)</td> <td>280,000</td> </tr> <tr> <td>3-5세반 누리공동과정 ('23.3.1~)</td> <td>280,000</td> </tr> <tr> <td></td> <td></td> </tr> </tbody> </table>	자격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 단가(월)	영유아	영유아가 구 전(全)계 층	정부지원 단가 100%	0세반 ('23.1.1~)	514,000	1세반 ('23.1.1~)	452,000	2세반 ('23.1.1~)	375,000	3-5세반 누리공동과정 ('23.1.1~2.28.)	280,000	3-5세반 누리공동과정 ('23.3.1~)	2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 인상 	
자격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 단가(월)																																									
영유아	영유아가 구 전(全)계 층	정부지원 단가 100%	0세반 ('22.1.1~)	499,000																																									
			1세반 ('22.1.1~)	439,000																																									
			2세반 ('22.1.1~)	364,000																																									
			3-5세반 누리공동과정 ('22.1.1~2.28.)	260,000																																									
			3-5세반 누리공동과정 ('22.3.1~)	280,000																																									
자격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 단가(월)																																									
영유아	영유아가 구 전(全)계 층	정부지원 단가 100%	0세반 ('23.1.1~)	514,000																																									
			1세반 ('23.1.1~)	452,000																																									
			2세반 ('23.1.1~)	375,000																																									
			3-5세반 누리공동과정 ('23.1.1~2.28.)	280,000																																									
			3-5세반 누리공동과정 ('23.3.1~)	280,000																																									
98	XII.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p>마)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만12세('09. 1. 1. 이후 출생)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중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p>	<p>마)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만12세('10. 1. 1. 이후 출생)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중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 전환에 따른 수정 																																									
98 ~ 99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p>다. 선정 기준 및 급여내용</p> <p>2) 양육수당 지원</p> <p>가) 지원 대상: (생략)</p> <p>* (생략)</p> <p>* (생략)</p>	<p>다. 선정 기준 및 급여내용</p> <p>2) 양육수당 지원</p> <p>가) 지원 대상: (생략)</p> <p>* (생략)</p> <p>*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학적 처리 현황 반영(교육부 변경 요청)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p>*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졸업 및 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는 제외)</p> <p>*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p> <p>나) 지원금액: (생략) (표 생략)</p> <p>*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3개월까지 영아수당(현금)을 수급하고, 만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영아수당 사업안내 참조)</p>	<p>*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p> <p>* '22년 이후 출생하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p> <p>나) 지원금액: (생략) (표 생략)</p> <p>* '22년 이후 출생하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p>		
99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p>다) 지원시점</p> <p>○ (생략)</p> <p>①, ② 생략</p> <p>*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p>	<p>다) 지원시점</p> <p>○ (생략)</p> <p>①, ② 생략</p> <p>*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p>	<p>▪ 서비스 간 변경신청 기준 수정</p>	
100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p>사) 소급지원</p> <p>(1) 출생아 소급지원</p> <p>※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영아수당의 출생아 소급지원에 해당(영아수당 사업안내 참조)</p>	<p>사) 소급지원</p> <p>(1) 출생아 소급지원</p> <p>※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부모급여의 출생아 소급지원에 해당(부모급여 사업안내 참조)</p>	<p>▪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 반영</p>	
113	부록2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p>2) 유아학비→보육료 자격변경</p> <p>○ (보육료 수급자격)</p> <p>○ (급여지급) 유아학비는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유아학비는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p>	<p>2) 유아학비→보육료 자격변경</p> <p>○ (보육료 수급자격)</p> <p>○ (급여지급) 유아학비는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보육료는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p>	<p>▪ 오타 수정</p>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135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서식6호]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서식6호]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변경에 따른 오타 수정 	
146	< 안내문 >	<신 설>	<p>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0~11개월) 아동에 대한 안내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에서 부모급여(현금) → 보육료로 지원 자격변경을 신청하셔야 연장 보육, 장애아 보육 등 기본보육료 514천원 이상 지원되는 보육료에 대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신청하지 않으시면 연장보육 등 기본보육료 514천원 이상의 비용을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1. 어린이집을 채용 하는 중에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전액을 결제하셔야 하므로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장시간 이용하지 않고, 단기간, 일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변경하시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입·퇴소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되며, 기본보육료 514천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 간의 차액은 입퇴소 이후 익월 또는 익익월에 수당을 지급받았던 기존 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퇴소일 변동이 어려우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소 의사를 표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제도 변경 내용 안내 필요 ▪ 정보원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단에 부모급여 안내 필요 부모급여 자격 : 현금 70만원 보육자격 : 보육료 514천원 + 현금 186천원 - 입퇴소일 차액 관련 담당 안내 필요 - 지침 또는 FAQ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이후에 퇴소일을 소급하실 수 없습니다. 1. 입·퇴소 당월에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신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153	XII. 부록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채 선정·관리기준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채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 <table border="1"> <tr> <td rowspan="2">- 보육사업계획</td> <td>•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td> <td>10</td> </tr> <tr> <td>•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td> <td>16 12</td> </tr> <tr> <td rowspan="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td> <td>• 전반적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 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td> <td>10 8 6</td> </tr> <tr> <td>•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td> <td>5</td> </tr> </table>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10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전반적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 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5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 <table border="1"> <tr> <td rowspan="2">- 보육사업계획</td> <td>•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td> <td>10</td> </tr> <tr> <td>•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td> <td>8 6</td> </tr> <tr> <td rowspan="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td> <td>• 전반적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 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td> <td>10 8 6</td> </tr> <tr> <td>•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td> <td>5</td> </tr> </table>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10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8 6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전반적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 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5	• 오기재 정정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10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전반적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 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5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10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8 6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전반적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 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5																							
153	XII. 부록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채 선정·관리기준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채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별표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재위탁)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④ 어린이집 운영계획 - 25점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u>10</u>)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u>8</u>)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u>6</u>)	[별표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재위탁)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④ 어린이집 운영계획 - 25점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u>5</u>)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u>4</u>)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u>3</u>)	• 오기재 정정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180	5.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 및 관리	<p>2. 내부 관리계획</p> <p>○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 기기 내부 관리 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준수토록 해야 함</p>	<p>2. 내부 관리계획</p> <p>○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 기기 내부 관리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후 관리방법 상세 작성 필요 	
181	5.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 및 관리	<p>2. 내부 관리계획</p> <p>○ 영상정보처리 기기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의 목적 - 영상정보처리 기기 책임자 및 담당자 -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 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1]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영상정보처리 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시행규칙 제9조의3 제4항에 따른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장치 또는 기기 -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되는 장소 -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최소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자동 삭제 가능 	<p>2. 내부 관리계획</p> <p>○ 영상정보처리 기기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의 목적 - 영상정보처리 기기 책임자 및 담당자 -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 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1]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영상정보처리 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시행규칙 제9조의8에 따른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장치 또는 기기 -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되는 장소 -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최소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자동 삭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관련 개정사항 수정(법 시행일 2021.06.30.) 	
182	5.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 및 관리	<p>5. 설치·운영 점검 등</p> <p>○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 1회 이상 점검해야</p>	<p>5. 설치·운영 점검 등</p> <p>○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 1회 이상 점검 후 별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 후 관리방법 상세 작성 필요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p>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 등을 통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p>	<p>제10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p>		
188	7.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p>4. 열람 등 기록의 관리</p> <p>○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 간 보관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정보 열람 요구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열람을 요구한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 영상정보 열람 요구자에게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 및 제공 사유 	<p>4. 열람 등 기록의 관리</p> <p>○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 간 보관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시 및 요청자(성명, 연락처) - 파일명/형태/내용 - 이용목적/사유 - 이용시간 및 이용장소 - 담당자 확인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10호 서식 영상정보 관리대장으로 용어 통일 	
203	별지 제 1호	<p>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p> <p>③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p>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p> <p>③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일시 및 요청자(성명, 연락처) 2. 파일명/형태/내용 3. 이용목적/사유 4. 이용시간 및 이용장소 5. 담당자 확인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10호 서식 영상정보 관리대장으로 통일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296	XIII 부록14 보육료 지원 예산의 예탁금 관리기준	<p>2. 예탁잔액 부족 시 처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지자체 조치사항) 지자체는 즉시 추가 예탁 또는 전담 금융기관으로 결제대금의 대납요청* 예산 추가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및 위탁기관으로 통보 <p>*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해당 지자체가 지급중단의 유보를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위탁기관은 지자체 추경계획의 실현 가능성, 전체 자금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3/4분기 이내에는 합의 하에 유보 조치 가능 <p>- 단, 3/4분기가 경과한 이후에는 지자체별 예탁잔액 부족 발생 시 원칙에 따라 결제·지급 중단 처리</p> <p><그림. 생략></p>	<p>2. 예탁잔액 부족 시 처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자체 조치사항) 지자체는 즉시 추가 예탁 또는 <삭제> 예산 추가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및 위탁기관으로 통보 <p>- <u>정책, 제도변경 및 예산편성상의 문제 등으로 예탁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자체는 예탁기한 내 위탁기관으로 결제대금의 대납요청* 가능. 단,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예외급여는 대납 불가</u></p> <p>* <u>결제대금 대납 제도는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전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대 30일 한도 내에서 발생한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해당 지자체가 지급중단의 유보를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위탁기관은 지자체 추경계획의 실현 가능성, 전체 자금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3/4분기 이내에는 합의 하에 유보 조치 가능 <p>- 단, 3/4분기가 경과한 이후에는 지자체별 예탁잔액 부족 발생 시 원칙에 따라 결제·지급 중단 처리</p> <p><그림.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조치사항 및 예외 사항을 현실화 - 결제대금 대납요청을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위탁기관(정보원)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절차 변경 - 착오방지를 위해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예외급여는 대납이 불가함을 강조 	
337	<일별 점검표>	<p>- 보존식 보존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배식 직전 소독된 전용용기에 100g 이상 채취하여 144시간 냉동 보관)**</p>	<p>- 보존식 보존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배식 직전 소독된 전용용기에 150g 이상 채취하여 144시간 냉동 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반영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343	XIII. 서식 ※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시 참고사항	□ 일별점검체크리스트 참고사항 4) 전기 화기 위험물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정기검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연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한 점검 을 받는다. 단,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 외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검사)	□ 일별점검체크리스트 참고사항 4) 전기 화기 위험물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정기검사 및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내용 현행화	
345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 시 참고사항 7) 전기가스 위험물 안 전관리	- 가스경보기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 신설	- 가스경보기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 전기시설 안전검사(연 1회), 도시가스 정기검사(가정 10년 1회, 민간 1년 1회) 실시	▪ 전기 및 도시가스 안전점검 사항 참고용으로 추가하여 반영	
344	XIII. 서식 ※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시 참고사항	□ 월별점검체크리스트 참고사항 6) 실내의 놀이기구와 공간 - 모든 놀이기구의 아래와 주위(안전지대)에 충격 흡수제의 성능은 양호한가? (조치사항) 영유아가 (이하 생략)	□ 월별점검체크리스트 참고사항 6) 실내의 놀이기구와 공간 - 모든 놀이기구의 아래와 주위(안전지대)에 충격흡 수제의 성능은 양호한가? (조치사항) 영유아가 (이하 생략) ※ 참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 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근거조항을 참고사항에 추가하여 어린 이집 놀이기구 안전 강화	
345	XIII. 서식 ※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시 참고사항	□ 월별점검체크리스트 참고사항 7)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 - 분배전반 및 각종 전기기구의 노후 및 파 손 된 것은 없는가? (조치사항) 노후하거나 파손된 분배전반 및 각종 전기기구는 전기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교체하 도록 한다. 또한,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 시 전기 안전점검과 정기점검이 실시될 수 있 도록 한다. ※ 관련법: 전기사업법 제65조~제66조의2 및 동법시 행규칙 제35조 ~제35조의4 등	□ 월별점검체크리스트 참고사항 7)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 - 분배전반 및 각종 전기기구의 노후 및 파손된 것은 없는가? (조치사항) 노후하거나 파손된 분배전반 및 각종 전기 기구는 전기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교체하도록 한 다. 또한,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 시 전 기 안전점검과 정기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법: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제13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11조 ~제17조 등	▪ 전기사업법 제65조 삭제<2020.3.3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2~4삭제 <2021.4.1.> 반영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345	XIII. 서식 ※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시 참고사항	□ 월별점검체크리스트 참고사항 8) 소방시설 관리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의거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 월별점검체크리스트 참고사항 8) 소방시설 관리 ※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의거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 관련 법 현행화	
346	XIII. 서식 ※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시 참고사항	□ 월별점검체크리스트 참고사항 - 건물 내 대피경로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없는가? (조치사항) 계단, 통로, 출입문 등 피난경로에 적치물 방치, 피난에 필요한 유효너비 확보, 비상출구의 잠금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계단, 통로, 출입문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은 즉시 이동조치 한다. 계단·통로·출입구의 유효너비, 출입문의 개폐방향, 비상구의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한다. ※ 관련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월별점검체크리스트 참고사항 - 건물 내 대피경로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없는가? (조치사항) 계단, 통로, 출입문 등 피난경로에 적치물 방치, 피난에 필요한 유효너비 확보, 비상출구의 잠금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계단, 통로, 출입문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은 즉시 이동조치 한다. 계단·통로·출입구의 유효너비, 출입문의 개폐방향, 비상구의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한다. ※ 관련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관련 법 현행화	

※ '1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 지침' 부분은 전면개정으로 개정대비표 불포함